

# 202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개요

###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71억 7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72억 2천 5백만원 대비 4천 8백만원(0.3%)이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212,564	17,225,064	17,177,261	△35,303	△47,803	△0.2%	△0.3%
세외수입	14,657,233	14,657,233	14,657,233	0	0	0.0%	0.0%
경상적 세외수입	3,189,269	3,189,269	3,189,269	0	0	0.0%	0.0%
임시적 세외수입	11,443,810	11,443,810	11,443,810	0	0	0.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154	24,154	24,154	0	0	0.0%	0.0%
보조금	2,540,498	2,552,998	2,511,998	△28,500	△41,000	△1.1%	△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14,833	8,030	△6,803	△6,803	△45.9%	△45.9%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목	구분	2023년도				비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7,212,564	17,225,064	17,177,261	△35,303	△47,803	
국고보조금		2,540,498	2,540,498	2,499,498	△41,000	△4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833	14,833	8,030	△6,803	△6,803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조 1,819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4조 4,930억 8천 4백만원 대비 6,888억 4천 7백만원(15.3%)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493,143,148	4,493,083,648	5,181,930,481	688,787,333	688,846,833	15.3%	15.3%	
행정관리	사업비	139,900,726	139,841,226	143,392,534	3,491,808	3,551,308	2.5%	2.5%
	행정운영경비	174,682,593	174,682,593	174,682,593	0	0	0.0%	0.0%
	재무활동	10,701,589	10,701,589	10,709,835	8,246	8,246	0.1%	0.1%
	조정교부금	4,167,858,240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685,287,279	16.4%	16.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별	2023년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4,493,143,148	4,493,083,648	5,181,930,481	688,787,333	688,846,833	15.3%	15.3%
행정장비구매	647,090	647,090	879,360	232,270	232,270	35.9%	35.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806	32,838,806	36,581,457	3,742,651	3,742,651	11.4%	11.4%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81,100	281,100	166,290	△114,810	△114,810	△40.8%	△40.8%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54,524	667,024	767,024	112,500	100,000	17.2%	15.0%
조정교부금	4,167,858,240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685,287,279	16.4%	16.4%
국고보조금 반환 (자치행정과)	101,589	101,589	103,033	1,444	1,444	1.4%	1.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428,820	2,428,820	1,928,820	△500,000	△500,000	△20.6%	△20.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50,000	1,350,000	1,309,000	△41,000	△41,000	△3.0%	△3.0%
국고보조금 반환 (남북협력과)	-	-	6,802	6,802	6,802	100.0%	100.0%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70,720	370,720	502,917	132,197	132,197	35.7%	35.7%

## II.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남북협력과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천 1백만원(보조금)을 감액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와 남북협력과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을 반영(자치행정과 △1천 1백만원, 남북협력과 5백만원)하여 총 2건에 6백 8십만원(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세입	총 계		17,225,064	17,177,261	△47,803	
	세 외 수 입	소 계	14,657,233	14,657,233	0	
		경상적	3,189,269	3,189,269	0	
		임시적	11,443,810	11,443,810	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4,154	24,154	0	
	보조금		2,552,998	2,511,998	△41,000	○ (남북협력과) 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1백만원  ◦ 국고보조금(1,434백만원→1,393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8,030	△6,803	○ (자치행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11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12백만원→1백만원)  ○ (남북협력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5백만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2백만원→7백만원)

## 가.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에 따른 세입예산 감액 조정

- 행정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총 2건(△6백 8십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833	8,030	△6,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행정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사용잔액(12백만원→1백만원)</li> </ul> </li> <li>○(남북협력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실제 집행잔액 반영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사용잔액(2백만원→7백만원)</li> </ul> </li> </ul>

- 행정국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 대상 금액을 2023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잔액과의 차액을 감액 조정 하려는 것으로 세입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금액이 소액이지만 남북협력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백만원 증가한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내시금액을 협의·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2. 세출예산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행정장비구매” 사업에 2억 3천 2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37억 4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6,852억 8천 7백만원 등 총 7건에 6,895억 3백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 5억원 등 총 3건에 6억 5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총 계	4,493,083,648	5,181,930,481	688,846,833	
세출	행정장비구매	647,090	879,360	232,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 27백만원</li> <li>○ 본관 공유공간 조성 집기 구매 105백만원</li> <li>○ 청사 유지관리 물품 100백만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및물품취득비(647백만원→879백만원)</li> </ul> </div>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2,838,806	36,581,457	3,742,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민원실 조성 이사비용 등 20백만원</li> <li>○ 공공운영비 (9,299백만원→9,319백만원)</li> <li>○ 임시민원실 조성 및 교체공사 208백만원</li> <li>○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 2,395백만원</li> <li>○ 축전지 노후화에 따른 UPS교체 25백만원</li> <li>○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122백만원</li> <li>○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기본계획 용역 50백만원</li> <li>○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198백만원</li> <li>○ 정밀안전진단 관련 보수 공사비 150백만원</li> <li>○ 시청사 유지관리 570백만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비 (2,936백만원→6,655백만원)</li> </ul> </div>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가정	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감리비 3백만원</li> <li>◦ 감리비 (0백만원→3백만원)</li> </ul>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81,100	166,290	△114,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안전관 23년도 채용 미추진으로 감소 △66백만원</li> <li>◦ 사무관리비(123백만원→57백만원)</li> <li>○ 공무직 22년도 최종 임금협약에서 출장여비 미반영되어 감소 △49백만원</li> <li>◦ 국내여비(49백만원→0백만원)</li> </ul>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667,024	767,024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감리비 100백만원</li> <li>◦ 시설비(0백만원→80백만원)</li> <li>◦ 감리비(0백만원→20백만원)</li> </ul>
	조정교부금	4,167,858,240	4,853,145,519	685,287,2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 등</li> <li>◦ 자치구조정교부금 (4,167,858백만원→4,853,146백만원)</li> </ul>
	국고보조금 반환 (자치행정과)	101,589	103,033	1,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1백만원</li> <li>◦ 국고보조금반환금(102백만원→103백만원)</li> </ul>
	비영리민간단체 공 익활동 등 지원	2,428,820	1,928,820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불용예산액 △500백만원</li> <li>◦ 민간경상사업보조(2,300백만원→1,800백만원)</li> </ul>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50,000	1,309,000	△4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1백만원(국비)</li> <li>◦ 민간경상사업보조(1,350백만원→1,309백만원)</li> </ul>
	국고보조금 반환 (남북협력과)	-	6,802	6,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 7백만원</li> <li>◦ 국고보조금반환금(0백만원→7백만원)</li> </ul>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70,720	502,917	132,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련원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부족분 132백만원</li> <li>◦ 공공운영비(266백만원→398백만원)</li> </ul>

## 가. 행정장비구매

- 동 사업은 본관 공유공간 조성 관련 소요 집기 구입비(1억 5백만원)와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1억원) 등 총 3건에 대해 2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79,360	647,090	232,270
자산및물품취득비	879,360	647,090	232,270

###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원실 이전 등 집기 구매 = 27,270천원
	-개인집기(책상, 서랍 등) 978,000원*25명 = 24,450천원
	-공용집기(회의테이블, TV 등) 2,820,000원*1개 부서 = 2,820천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비 3,000,000,000원 * 5% - 기반영역 45,000,000원 = 105,000천원
	○시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조성 집기 구매 -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따라 공사비와 연계하여 집기비 반영 -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 행정국은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따른 소요 집기 구매로 1억 5백만원, 조성 공사에 따른 민원실 이전 관련 소요 집기 구매로 2천 7백만원, 청사 유지관리 물품구입 추가 소요금액 1억원 등 총 2억 3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사무실 집기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내구연한 및 기능 이상 여부 검토 등 재활용 가능 물품 확인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수반한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나, 행정국은 세밀한 수요조사 및 세부집행 계획 없이 본관 공유공간 조성에 필요한 집기를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5%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실 이전 집기도 기존 집기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신규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민원실 이전 집기 신규 구매 사유로, 집기 이전 작업에 시일이 걸리므로 민원처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미리 이전할 공간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시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용(1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부족하게 편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예산편성 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동 물품(냉·난방기, 회의용 탁자·의자 등) 구입비용 추경사유에 대해 긴급수요에 맞춰 탄력적 구매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임.

[ 청사 유지관리 물품 내역 ]

구분	품목	단가	규격	사진
냉난방기	냉난방기 (벽걸이형)	1,045,000원	냉방 3.5kw 난방 4.3kw	
회의실 확충	회의용탁자	324,000원	1800×500× 740mm	
	의자	142,000원	510×555× 830mm	
청소장비	바닥 청소차 (탑승형)	22,000,000원	1900×1200×1450mm 청소능력 8,160m³/h	
	바닥 청소차 (보행형)	4,000,000원	1185×540×1000mm 청소능력 2,040m³/h	
통신장비	비디오프로젝터	36,300,000원	스크린밝기 16,000 ANSI lm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동 사업은 “시청사 본관 공유공간 조성 변경 계획”(2022.12.7.)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임시민원실을 조성 및 재배치 하며,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며, 시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및 ‘감리비’ 37억 4천 3백만원(총 10건)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시청사 건축물 및 기계·전기·통신·소방·승강기 등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 정비와 고장 발생시 신속한 수리로 안정적인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청사임차, 공기질 개선, 녹지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6,581,457	32,838,806	3,742,651
사무관리비	20,188,359	20,188,359	0
공공운영비	9,319,047	9,299,047	20,000
국외업무여비	40,000	40,000	0
공무원 교육여비	6,680	6,68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0
특정업무경비	289,200	289,200	0
시설비	6,655,171	2,935,520	3,719,651
감리비	3,000	0	3,000

## 〈 세 부 산 출 내 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 공 운 영 비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 = 20,000천원
	-이사, 철거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이사, 철거비용
시 설 비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 = 208,200천원
	-건축공사 123,200,000원 * 1식 = 123,200천원
	-전기공사 30,000,000원 * 1식 = 30,000천원

-기계공사			
30,000,000원 * 1식	=		30,000천원
-통신공사			
25,000,000원 * 1식	=		25,000천원
○본관 공유공간 조성		=	2,395,000천원
-공사비			
1,211(면적) * 2,478,000원 -	=		2,110,858천원
890,000,000원(기반영액)			
-설계비			
300,000,000원 * 6.67% -	=		160,100천원
40,000,000원(기반영액)			
-기타			
3,000,000,000원 * 5% -	=		124,042천원
25,958,000원(기반영액)			
○축전지 노후화에 따른 UPS 교체		=	25,000천원
-자재비			
23,230,000원 * 1식	=		23,230천원
-교체비			
1,770,000원 * 1식	=		1,770천원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	122,000천원
-염수살수장치 설치			
103,000,000원* 1식	=		103,000천원
-소방시설 설치			
19,000,000원 * 1식	=		19,000천원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	198,750천원
-보일러 물품비			
133,750,000원 * 1식	=		133,750천원
-철거 설치 공사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설계 및 검사비 등			
15,000,000원 * 1식	=		15,000천원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기본계획 용역		=	50,000천원
50,000,000원 * 1식			
○정밀안전진단 관련 보수공사비		=	150,701천원
150,701,000원 * 1식			
○시청사 유지보수		=	570,000천원

	-시청사 방수 보수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서소문청사 공용공간 정비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본관 방화문 교체 등 보수공사 70,000,000원 * 1식	=	70,000천원
	-시청사 안전난간 보수공사 100,000,000원 * 1식	=	100,000천원
	-서소문청사 후생동 진입로 정비공사 80,000,000원 * 1식	=	80,000천원
	-서소문청사 노후 시설물(옹벽) 보수공사 70,000,000원 * 1식	=	70,000천원
	-광장 보도블럭 보수공사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관 1층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유지를 위한 임시민원실 시설 공사비</li> <li>- 본관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청사 방문객을 위한 갤러리 및 카페, 라운지 등 개방 공간 마련</li> <li>- 축전지 노후화로 비상시 청사 중요설비에 전기 공급을 위해 UPS 교체</li> <li>-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력 부재 시 화재나 겨울철 강설 대응</li> <li>- 본관 난방용 보일러 고장 및 수리불가 판정에 따라, 노후 온수보일러 2대 교체</li> <li>- 을지로 별관 증축을 통해 사무공간 확보 필요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추진</li> <li>-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본관, 도서관 보수 시행</li> <li>- 시청사 유지보수공사 필요(방수, 방화문 교체, 진입로 정사, 옹벽 보수 등)</li> </ul>		
감 리 비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증감사유		
	-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력 부재 시 화재나 겨울철 강설 대응 관련 감리비		

- 본관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청사 방문객을 위한 갤러리 및 카페, 라운지 등 개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본관 공유공간 조성’ 시설비는 총 33억 5천만원 중 본예산에 기반영된 9억 5천 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2022년 12월에 수립되고 올해중 완공 예정임을 감안하면,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소요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3.5.30.기준)

사업명	통계목	본예산 (A)	기집행액*	집행잔액	추경필요액 (B)	총예산 (A+B)
본관 공유공간 조성	시 설 비	955,000	25,000	930,000	2,395,000	3,350,000
	자산취득비	45,000	-	45,000	105,000	150,000
	총 계	1,000,000	25,000	975,000	2,500,000	3,500,000

[본관 공유공간 조성 개요]

□ 추진배경

- 실외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후 서울광장 등 행사를 즐기기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휴게공간 미흡
- 모든 방문객이 환영 받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갤러리 및 카페·라운지 등 개방 공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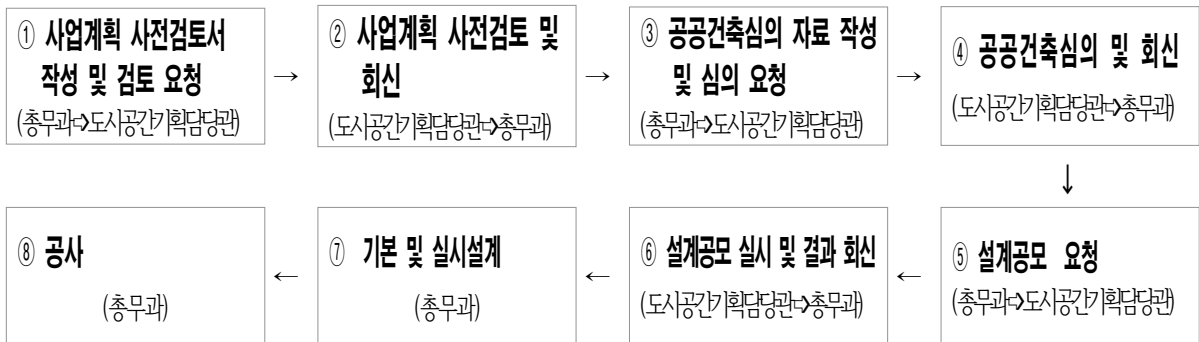
□ 추진방향

- 누구나 환영받는 예술적 감성의 청사 안내공간 조성
- 카페·라운지와 연계된 개방형 민원실 조성
- 편안히 쉬며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시민 갤러리 설치 등

## □ 세부 추진 계획

- 위치 및 면적 : 본관 1층 공용홀 등 시민공간(1,338㎡)
- 개선내용 : 개방형 민원실 + 시민 갤러리,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 조성
- 추진방법
  - 기본방향 및 디자인 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공모(도시공간기획담당관)
  - 공사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계 및 공사(총무과)

## ○ 추진절차



## ○ 소요예산 : 총3,5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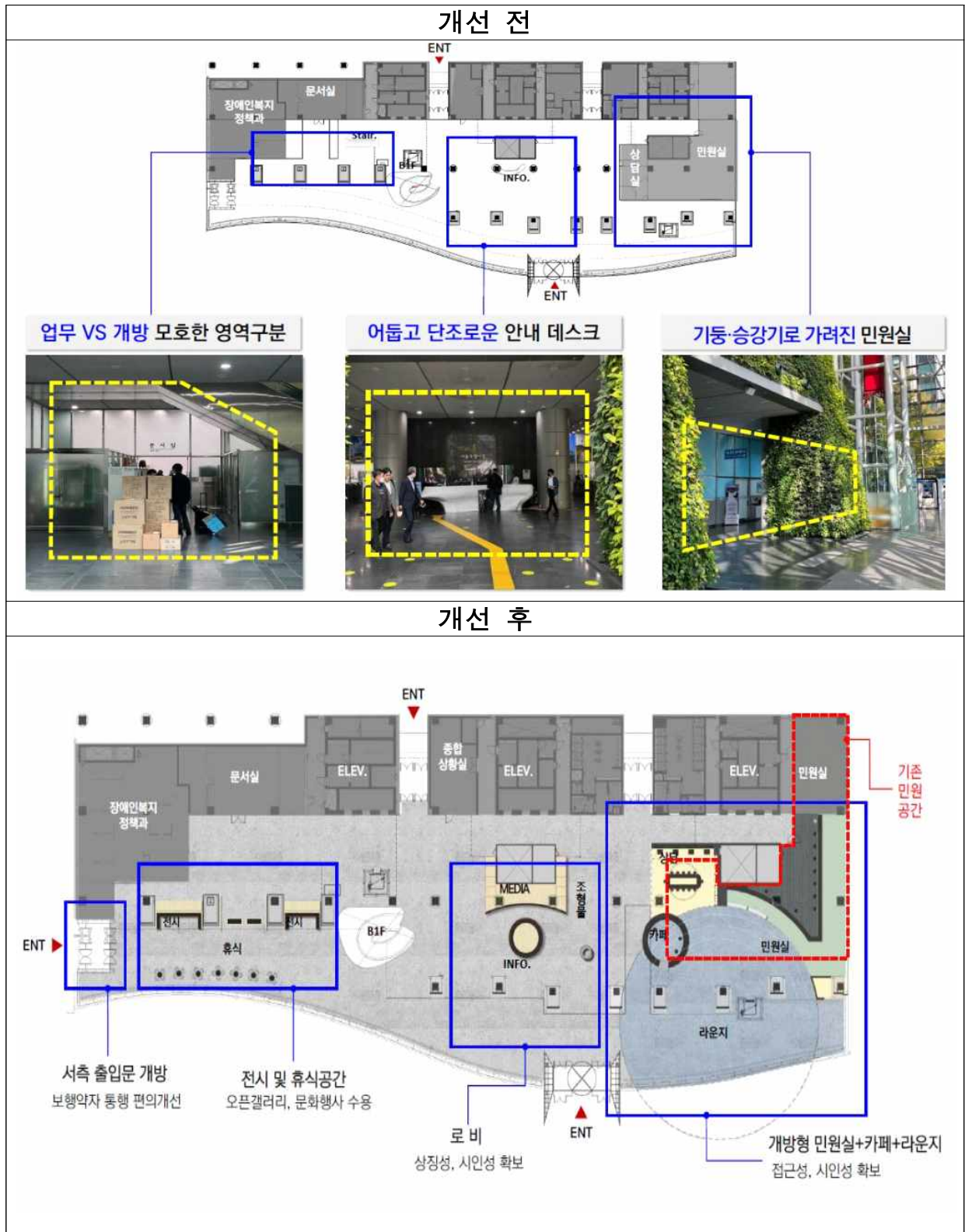
- 
- 공사비 :  $1,338\text{㎡} \times 2,243\text{천원} \approx 3,000\text{백만원}$   
(민원실 2,000백만원, 휴식공간 700백만원, 안내공간 300백만원)
  - 설계비 :  $3,000\text{백만원(공사비)} \times 3.5\% = 105\text{백만원}$
  - 기 타 :  $3,000\text{백만원(공사비)} \times 8.2\% \approx 245\text{백만원}$
  - 비 품 :  $3,000\text{백만원(공사비)} \times 5\% = 150\text{백만원}$
- 

## □ 추진일정

- '22.12. 사업계획 사전검토(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1. 공공건축심의(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2. ~ 4. 설계공모(도시공간기획담당관)
- '23. 5. ~ 7. 기본 및 실시설계(총무과)
- '23. 8. ~ 12. 공사발주 및 공사(총무과)

붙임

개선 전 · 후 평면도(안)



- 출처: 행정국 사업방침 편집



- 다만, 추정 사전절차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공사비에 물가상승률(11.1%)을 추가 반영하여 공사비를 조정하고 (계획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내용 또는 범위를 예산에 맞추어 조정), 철거비를 별도로 반영하며, 설계용역비에 인테리어 가산으로 1.5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 행정국에서는 공사범위 축소조정을 통해 사전검토 의견에 맞추는 방식으로 조치한 바, 사업추진 시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발취) ]

3. 예산계획			
공사비	기타	건축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의 공공업무시설 신축단가의 약 61.1%로 산정하여 2,243천원/㎡를 반영하였으나, 물가상승률(11.1%) 추가 반영 필요</li> <li>•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내용을 조정하여 공사비 감액 필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건설공사비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3월 → 22. 3월 : 22.20% 상승 / 연간 평균 11.1% 반영 필요</li> <li>- 노원구청 리모델링(공사면적 1,437.55㎡, 공사기간 21.1. ~22.4.)</li> <li>- 설계비 1.57억/공사비 약40억(공사비단가 278만원/㎡)</li> </ul> </div>
		부지조성공사비	-
		기존시설철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를 별도로 확보 필요</li> <li>- 1,230㎡ × 90천원/㎡ × 1.1(건설공사비지수, 노임 등 연 11.1% 상승률) = 83백만원</li> <li>※ 철거공사비 : ‘22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 철거비 2층 이하</li> <li>※ 철거면적은 구체적인 공사범위를 검토하여 재산정 필요</li> </ul>
	전시공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물 설계·공사 영역은 건축설계·공사와 구분하여 별도 발주 필요</li> <li>• 전시 콘텐츠 분야 전문업체를 사업초기에 선정하여 설계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설계비	요율	건축물종별·도서량	○
		인증 관련	-
	특수요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법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는 설계용역비의 1.5배 가산 필요</li> </ul>
	설계용역비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1.5배(인테리어 가산) 적용</li> <li>• 공사비 변경 시 변경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재산정 필요</li> </ul>
감리비	감리방식		○
	감리(건설사업관리)비용		○
부대비	용역비	설계공모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테리어 가산에 따른 설계비 상향 시 공모비 조정이 필요함</li> <li>• 지명공모 추진 시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정 설계공모 보상비를 책정할 것</li> </ul>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조치결과(발취) ]

검토 항목	검토의견	조치내용
건축 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의 공공업무시설 신축단가의 약 61.1%로 산정하여 2,243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물가상승률(11.1%) 추가 반영 필요</li> <li>•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내용을 조정하여 공사비 감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뢰부서 3,000백만원 → 검토결과 <b>1,230㎡</b> *3,578천원*0.6*1.1=2,905백만원</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건설공사비지수 - 20. 3월 → 22. 3월 : 22.20% 상승 / 연간 평균 11.1% 반영 필요</p> <p>▷ 노원구청 리모델링 (공사면적 1,437.55㎡, 공사기간 21.1. ~22.4.) - 설계비 1.57억/공사비 약40억(공사비단가 278만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상승률 11% 반영</li> </ul> <p><b>1,211㎡</b>×3,578천원×0.6×1.11 = 2,885백만원</p>
철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를 별도로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230㎡</b> × 90천원/㎡ × 1.1(건설공사비 지수, 노임 등 연 11.1% 상승률) = 83백만원</li> </ul> </li> <li>※ 철거공사비 : ‘22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 철거비 2층 이하</li> <li>※ 철거면적은 구체적인 공사범위를 검토하여 재산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 별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비 : 86천원/㎡, 철거설계비 : 4천원/㎡</li> </ul> </li> <li>※ 철거설계는 리모델링 설계에 포함</li> <li>- <b>1,211㎡</b>×86천원×1.11 = 115백만원</li> </ul>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1.5배(인테리어 가산)를 적용하여 1.53억원 확보 필요</li> <li>• 공사비 변경 시 변경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재산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설계비 1.68억)</li> </ul>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본관 공유공간 조성 공사기간 중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민원실 조성 및 재배치’는 임시민원실 조성 공사 시설비 2억 8백만원과 본관 1층 장애인복지과 이전 재배치 등 이사·철거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 및 민원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임시민원실 조성을 위한 추경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체적인 임시민원실 설치 장소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장소 검토 지연으로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를 본관 2층으로 이전하고 1층에 장애인 “원스탑민원상담실”을 별도 조성 계획인 바,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임시민원실 이전 개요 ]

- ◆ 본관 1층 공유공간 조성공사 추진기간('23. 8월 ~ 12월)동안 청사 방문 민원인 응대, 민원 접수를 위한 임시공간 확보 필요
  - (1층) 임시민원실 임시 이전 : ① 신청사 인근 부림빌딩(1층) 또는 ② 서소문별관 1동으로 이전하는 방향 검토 중
  -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본관 2층으로 이전
    - ※ 1층에는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한 “원스탑민원상담실” 별도 조성 예정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산출내역
사업비 합계		255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본관 임시민원실 조성 공사	208	· 건축공사 : 123,200천원 · 전기공사 : 30,000천원 · 기계공사 : 30,000천원 · 통신공사 : 25,000천원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본관 1층 기존부서 이전 재배치	20	· 이전 및 집기류 철거 : 20,000천원
행정장비 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시민원실 집기 구입	27	· 임시민원실 조성 집기 구매 : 27,270천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송월동 차고지 도로 염수살수 장비 및 소방시설 설치 추경은 야간 및 주말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제설장치와 소방시설을 도입하고자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총무과 차량지원실(송월동 차고지) 운영현황 ]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면적 388㎡)



송월동 차고지 전경



송월동 차고지 입구

- 연 혁 : 1996. 3. 20. 송월동 청사 소유권 이전(기상청 → 서울특별시)
- 인력현황 : 현원 33명
- 차량현황 : 총 53대 (단위 : 대, 2023. 6. 7.)

구 분	차종별			
	소계	승용	승합	화물
대 수	53	36	12	5

- 주요업무 : 공용차량 관리·운영(실·국 공용차량 배차 및 차량 관리)
- 문 제 점
  - 차고지의 입·출입구가 경사로로 되어있어, 겨울철 제설 작업 및 신속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움
  - 송월동 차고지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보안에 취약함에 따라 소방 및 제설장치 필요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동절기 안전관리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송월동 차고지 소방설비 및 제설장치 설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건은 본예산 편성시 감안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바, 부정확한 본예산 추계로 누락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상대적으로 친환경 방식인 도로열선장치 대신, 비용 및 관리 용이성을 감안하여 염수액분사장치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량의 염수액 분사로 차량과 도로시설물의 부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관련사진 ]



〈소방 감지기〉

〈소방 수신반〉

〈염수액 분사〉

[ 도로열선장치와 비교 ]

구분	도로열선장치(A)	염수액 분사장치(B)	차액(A-B)
설치비	265백만원	103백만원	162백만원
연간유지비	3.4백만원(전기요금)	1.5백만원(염수액+전기요금)	1.9백만원

◆ 염수액 분사장치는 배관이 노출되어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편리

- 반면, 열선장치는 콘크리트 안에 열선이 매입되어 보수 및 관리 어려움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서소문청사 1동 노후 UPS 교체 및 본관 노후 온수보일러 교체 추경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고장 등으로 2억 2천 3백만원(UPS 2천 5백만원, 온수보일러 1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 정전 시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방전하여 일정시간(1시간 내외) 동안 전기를 공급함. 청사 내 주요 시설인 통신장비, 당직실, 방재실 등에 전기 공급

○ 서소문청사 1동 UPS는 2023년 5월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축전지 교체 권고에 따라, 교체주기 8년이 경과된 현 축전지(2014년 12월 설치)를 교체하려는 것이고,

○ 본관 온수보일러(2대) 교체는 2023년 2월 고장(진공 불량) 발생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수리를 추진하였으나, 수리비용이 새제품 구매비용보다 더 많이 발행함에 따라 교체하려는 것으로, 설비 교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각종 설비는 평소 관리상태에 따라 성능 및 수명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설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을지로별관 증축 관련 추경은 현재 비어있는 을지로별관(국가등록문화재)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건축물 전면준치 및 후면철거 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증축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회가 필요하고,

기본구상용역비는 총 2억 9천 6백만원으로, 용역기간 10개월이 예상되어 올해 용역완료에 어려움에 따라, 올해 1차 계약(5천만원) 진행후, 2차 계약(2억 4천 6백만원)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청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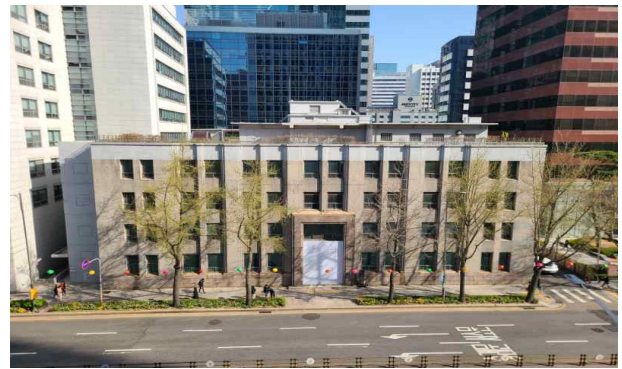
[ 을지로별관 현황 ]

(구 미문화원, 국가등록문화재) ※ 준공일자 : 1938.11.1.

-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63(부지면적 : 1,983.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19.4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 시설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위치도>



<을지로별관 전경>

[ 용역개요 ]

- 용역명 : 을지로별관 증축을 위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2023년 9월~2024년 7월)
- 용역비 : 296백만원(1차: 2023년 50백만원, 2차: 2024년 246백만원)
- 과업내용(안)

- ▷ 현황조사 및 분석(입지조건 분석, 국내외사례조사, 관련법규 등)
- ▷ 고증 및 현황조사(문화재 가치,내용 및 보수부위 상태 등 조사)
- ▷ 실측업무(문화재 주변 배치, 평면 등 상세 조사)
-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청사조성방식, 건축규모, 배치/평면/조감도 등)
- ▷ 그 밖의 업무(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절차 이행 등)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편집

- 다만, 사전검토가 부실할 경우 상당금액(예상 공사비 약 686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행정국에서는 입지조건, 관련법규, 청사조성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충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응과 병행하여 청사 신축 검토를 포함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시청사 유지보수 추경은 방수, 방화문 교체, 진입로, 옹벽 등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5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예산액 (백만원)	비고
과적한 청사관리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계	570	
	시청사 방수 보수공사	100	상반기 서울도서관 내부 실내 천정 누수, 서소문청사 입구 케노피 누수 및 시청사 층별 탕비실 내부 천정 누수 발생 등에 따라 장마철 대비 방수공사
	서소문청사 공용공간 정비공사	100	서소문청사 층별 화장실(10개층) 칸막이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이용불편 민원 지속 발생으로 조속한 공사 실시
	본관 방화문 교체 등 보수공사	70	층별 방화문 경첩 훼손에 따른 탈락 등 방화문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대비 긴급공사
	시청사 안전난간 보수공사	100	대구 호텔 계단 난간 틈새 여아 추락사 발생(4월)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보강공사 긴급 실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진입로 정비공사	80	후생동 전면 진입로 바닥 탈락(3월) 등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하여 정비공사 조속히 실시
	서소문청사 노후 시설물(옹벽) 보수공사	70	서소문청사 인근 옹벽 상부 기와 노후화 및 탈락 발생 등에 따라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
	광장 보도블럭 보수공사	50	보도블럭 탈락 발생 및 광장이용 시민 불편 민원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시청사 유지보수는 본예산에 각종 개보수공사 용도로 12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금번 추경 7건 중 일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추경 목적에 비추어, 최대한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으로 편성했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세밀한 검토없이 연례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에 5억 9천 4백만원이 투입되었는 바, 이로 인해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금액 ]

최종 리모델링 비용 : 594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금액 : 537백만원

○ 관급자재 비용(전기히트펌프(냉난방기) 설치) : 26백만원

○ 설계용역(26백만원)·감리용역(5백만원) 비용 : 31백만원

※ 예산과목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중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 활용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동 사업은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감리비 1억원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767,024	667,024	100,000
사무관리비	30,000	30,000	0
공공운영비	5,000	5,000	0
민간위탁금	41,524	41,524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500	12,500	0
시설비	80,000	0	80,000
감리비	20,000	0	2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578,000	578,000	0

###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 설 비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공사비	= 80,000천원
	-철거공사비 45,000,000원	= 45,000천원
	-철거설계비 8,000,000원	= 8,000천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26,400,000원	= 26,400천원
	-석면조사 600,000원	= 600천원
	증감사유	
	구조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필요	
감 리 비	○광진구 마을활력소 철거 감리비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구조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필요	

- 마을활력소는 2015년부터 총 62개소 조성을 추진하여, 사업철회, 폐관 등으로 15개소는 운영을 종료하였고, 2023년 5월 현재 47개소가 자치구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2023.5.31.기준) ]

운영형태	자치구	시 설 명	소 재 지
區 직영 (36)	중 구	다 산 마 루	중구 동호로15길 50
	성 동 구	금 호 1 가 동	성동구 행당로 15, 3층
		합 께 보 고	성동구 마장로42길 11
	광 진 구	고 랑 올 림	광진구 긴고랑로 131
	중 랑 구	상 봉 마 중	중랑구 망우로55길 19, 2층
		검 재 마 중	중랑구 검재로 68, 1~2층
		망 우 마 중	중랑구 용마산로 461
		사 가 정 마 중	중랑구 면목로45길 3-2
	성 북 구	문 화 공 간 이 육 사	성북구 종암로21가길 36-1
		정 립 합 동 지	성북구 정릉로21길 61-12
	강 북 구	어 울 향 기	강북구 한천로105길 21, 지하
	도 봉 구	은 행 나 루	도봉구 시루봉로 94, 2층
		학 동 지	도봉구 방학로2길 27, 2층
		창 오 랑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 3층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도봉구 노해로 227
	노 원 구	중 계 온 마 을 센 터	노원구 한글비석로 371
	은 평 구	한 옥 마 을 회 관	은평구 연서로48길 74
		고 리 마 루	은평구 갈현로 301
		토 정 골 사 랑 방	은평구 갈현로7길 34-1
	서대문구	천 연 옹 달 샘	서대문구 독립문로10길 6
		나 비 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1, 4층)
	구 로 구	천 왕 역 버 들	구로구 오리로1130, 지하 2층
		다 붓 다 붓	구로구 디지털로19길 22
		모 아 래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198
	금 천 구	독 산 4 동	금천구 독산로 232
		맹 글 맹 글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새 재 미	금천구 독산로50길 105
늘 솔 나 루		금천구 금하로 764	
영등포구	문 래 목 화	영등포구 도림로141가길 16	
동 작 구	대 방 누 리 마 을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보 라 매 동 지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41	
	꽃 담 소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5	

		사 랑 동 지	동작구 사당로29다길 32-6
	강 남 구	마을활력소 우리동네 생활지원센터	강남구 삼성로75길 24
	강 동 구	성 내 어 울 터	강동구 올림픽로62길 35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강동구 구천면로68나길 17
區 위탁운영 (11)	성 동 구	사 근 동	성동구 사근동길 72
	동대문구	휘 경 아 뜰 리 에	동대문구 망우로 55
		회 기 한 지 붕	동대문구 회기동 60-285
	성 북 구	길 음 아 지 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34
	도 봉 구	초 록 뜰	도봉구 도봉로181길 65-8
		산 돌	도봉구 방학로6길 20-9
		창 이 마 을 꿈 터	도봉구 덕릉로59마길 18-7, 4층
	노 원 구	수 락 행 복 발 전 소	노원구 동일로242길 77
		도 암 어 울 마 루	노원구 덕릉로126나길 14
	강 서 구	종 해 문 화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지하1층
금 천 구	어 울 샘	금천구 탑골로 22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본 건은 광진구 마을활력소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에 따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추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동 건 용도폐지 2023년 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적정

- 다만, 2021년 6월 광진구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 착공후 같은해 10월 공사중단을 결정하여, 기 투입된 1억 5천 7백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바 있음.

※ 행정국은 설계도면 및 당초 구조안전진단결과(B등급)와 실제 건축물 구조가 상이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공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공사중단이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리모델링 설계전 정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광진구 마을활력소 용도폐지 추진경위 ]

2019. 9. 3.	광진구(구의2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2019. 9.24.	제5차 공유재산심의 → 적정
2020. 2.27.	구의2동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및 조성(변경) 계획 수립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 조성방식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
2020. 3.19.	제2차 공유재산심의(재심의) → 조건부 적정 - (조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노후건물에 대한 내구연한 검토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2020. 6.15.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2020. 6.19. ~ 12.18.	리모델링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진행
2021. 6.30.	착공
2021.10. 1.	공사중단 결정 - 당초 안전진단 결과 및 설계도면과 건축물 구조 상이하여 안전사고 우려
2022.10. 6.	사업종료 통보(市 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종료)
2023. 4.14.	구조안전진단 용역 실시 - 안정성 문제로 공사 중단하였음에도 후속조치 전무 및 건물 노후도('76년 사용승인) 고려하여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안전진단 재추진

- 출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발취

[ 2021년 광진구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378,923	156,794	41.4%	
시 설 비	375,071	153,617	41.0%	
건축·기계설비	285,174	109,578	38.4%	· 건축·기계설비 2개사 공동도급 · 관급자재(냉난방기) 포함
건축	237,079	109,578	38.4%	
기계설비	48,095			
전기	60,603	24,849	41.0%	
통신	19,021	9,130	48.0%	
폐기물처리	10,273	10,060	97.9%	
감 리 비	3,852	3,177	82.5%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라.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4조 1,678억 6천만원) 대비 6,852억 9천만원 (16.4%)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853,145,519	4,167,858,240	685,287,279
자치구조정교부금	4,853,145,519	4,167,858,240	685,287,279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9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구조정교부금	○2022년 조정교부금 예결산 차액 반영 685,287,279,000원 = 685,287,279천원
	증감사유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예·결산 차액의 22.6%과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구에 신고납부된 레저세분 예·결산 차액의 20%를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반영

## 〈2022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 (c × 22.6%) <sup>1)</sup>	38,123	44,968	6,845
보통세 합계 (c = a + b)	168,686	198,973	30,287
보 통 세(a) <sup>2)</sup>	167,334	197,476	30,141
취 득 세	62,046	58,712	-3,334
주 민 세	6,166	7,287	1,120
자 동 차 세	12,165	10,258	-1,907
레 저 세	299	1,051	753
담 배 소 비 세	5,715	5,886	171
지 방 소 비 세 <sup>3)</sup>	20,421	25,937	5,516
지 방 소 득 세	60,521	88,345	27,823
지난년도 보통세(b)	1,352	1,497	146
취 득 세	110	224	115
주 민 세	97	58	-39
자 동 차 세	692	605	-86
지 방 소 득 세	454	609	156

1) 조정교부금(6,845억원) = 일반조정교부금(6,160억원, 90%), 특별조정교부금(685억원, 10%)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3)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근거 지방소비세 중 균특회계보전분, 지방교육세전출분 제외

## 〈2022년도 레저세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액〉

(단위: 억원)

자치구(11)	장외발매소(배분대상)			'22년도분 예산액(A)	징수액의 20%(B)	정산액 (B-A)
	경마	경륜	경정			
전 체				191.6	199.7	8.1
종로구	○			7.0	7.1	0.2
중구		○	○	4.3	4.8	0.5
동대문구	○	○	○	32.3	33.4	1.1
중랑구	○	○	○	22.4	23.5	1.1
성북구		○	○	7.3	7.8	0.5
강북구	○			13.6	14.2	0.6
도봉구	○			13.2	13.7	0.4
영등포구	○			40.2	41.6	1.4
관악구		○	○	9.6	10.6	1.0
강남구	○	○	○	20.9	21.8	0.9
강동구	○			20.8	21.4	0.5

-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1)에 따라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억원)

구 분	'23년 당초예산	'23년 추경예산(안)	증가액
합 계	41,679	48,532	6,853
일반·레저세분	37,551	43,719	6,168
중 로 구	689	894	205
중 구	160	340	180
용 산 구	795	1,010	215
성 동 구	1,228	1,463	235
광 진 구	1,527	1,773	245
동 대 문 구	1,998	2,261	263
중 량 구	2,112	2,383	271
성 북 구	2,362	2,653	291
강 북 구	2,140	2,408	269
도 봉 구	2,085	2,348	264
노 원 구	2,743	3,062	319
은 평 구	2,289	2,586	297
서 대 문 구	1,613	1,859	246
마 포 구	1,170	1,415	245
양 천 구	1,671	1,924	253
강 서 구	2,067	2,372	305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구 로 구	1,974	2,252	278
금 천 구	1,459	1,687	228
영 등 포 구	1,090	1,343	253
동 작 구	1,610	1,861	251
관 악 구	2,276	2,564	289
서 초 구	86	311	225
강 남 구	43	44	1
송 파 구	599	867	268
강 동 구	1,765	2,038	272
특별조정교부금	4,128	4,813	685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첫째, 2023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4.7%)가 이미 4.7%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09.8%)시 9.8%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3년도 배분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3년도 배분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A)	'23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4.2%	104.7%	109.8%	5.1%p
강남구 제외	69.2%	101.6%	107.0%	5.4%p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아울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6,85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바, 당초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와 레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보통세 결산차액)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8년도	29,214	33,241	4,027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099	35,293	4,194	'20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0년도	32,869	40,553	7,685	'21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1년도	32,785	45,162	12,377	'22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2년도	38,123	44,968	6,845	'23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조정교부금(레저세분 결산차액)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22년도	191.6	199.7	8.1	'23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 '22년도분 예산액(A)은 '23년 편성)

**마. 국고보조금 반환(자치행정과, 남북협력과)**

- “국고보조금 반환”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 및 “한국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의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기정 예산(1억 2백만원) 대비 1백 4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 남북협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의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부서명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03,033	101,589	1,444
남북협력과	국고보조금반환금	6,802	0	6,802

**〈 자치행정과 세부 산출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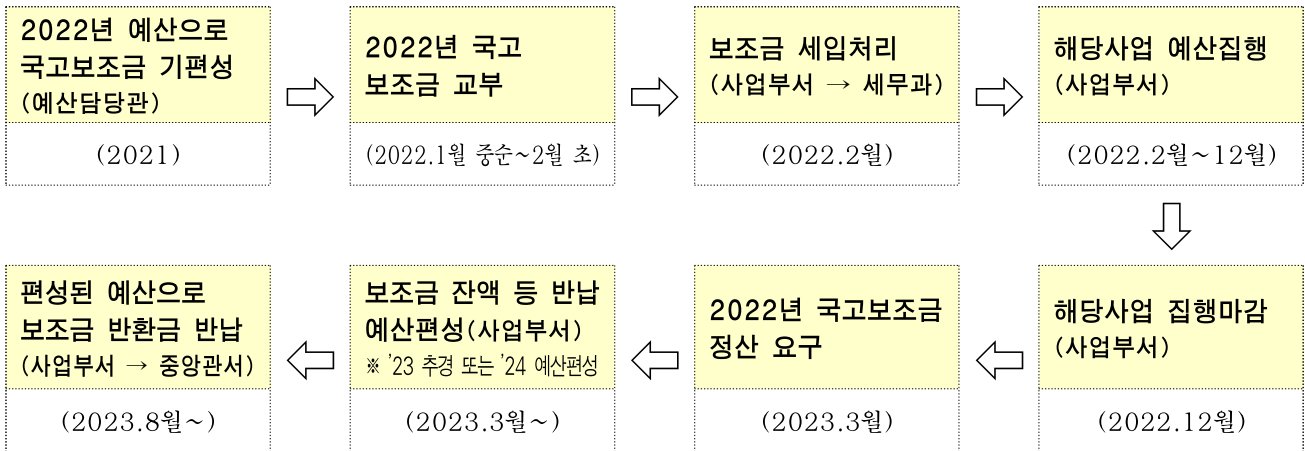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434,500원 = 1,435천원
	○2022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180원 = 9천원
	증감사유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발생

### 〈 남북협력과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6,802,000원 반납 <span style="float: right;">= 6,802천원</span>
	증감사유
	202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 절차〉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임.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다만, 자치행정과의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사업과 남북협력과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설계 및 집행을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	사업명	계
계			43,245
자치행정과	소계		18,799
	2020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7,869
	2021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9,495
	2022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1,435
남북협력과	소계		24,446
	202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7,196
	202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0,449
	202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6,801

## 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 동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불용 예상액 5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928,820	2,428,820	△500,000
사무관리비	128,820	128,820	0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0	2,300,000	△500,000

###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단체 사업비 지원 $1,800,000,000(\text{소요액}) - 2,300,000,000(\text{예산액}) = \Delta 500,000\text{천원}$
	증감사유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완료에 따른 불용 예상액 5억원 감추경 (23억 → 18억)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소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 및 독창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음.

[ 2023년 지원 개요 ]

○ 선정분야 : 6개 유형

- 민선8기 **시정운영 핵심과제** 연계 사업 및 **시민체감형** 사업 반영
- 사전 수요조사('22.11.17.~11.30., 50건) 결과 반영
  - ※ 사회복지(44.0%) > 안전(20.0%) >환경(10.0%), 건강(10.0%) > 문화관광(6.0%), 사회통합(6.0%) > 경제(4.0%) 순

동행 특별시	매력 특별시	안전 특별시
① 복지·건강 ② 사회통합	③ 민생경제 ④ 문화관광·체육	⑤ 교통·안전 ⑥ 환경보전·자원절약

※ 2022년 4개 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 중복선정 예방 및 서울시 민간단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 제한
  - ※ ('22년) 서울시 주사무소를 둔 서울중앙정부 등록단체 → ('23년) **서울시 등록**
  -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시 신청자격을 관할 등록 단체로 제한

○ 지원규모 : 2,300백만원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금액 확정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2023년 사업모집에는 176개 단체가 접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144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관부서 사전검토 및 외부 15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분과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총 97개 단체를 선정(17억 7천 3백만원 지원, 업체당 평균 1천8백만원)한 바,
  - ※ 2022년(125개) 대비 22.4% 감소한 것으로, 2023년에 신청자격 및 심사·선정기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당초 사업예산 23억원에서 불용예상액 5억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보임.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재정담당관-5942, 2023.5.19.)
  
- 다만,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당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2022년 대비 3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을 증액했었으나 이번에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정확한 사업검토 없이 부실하게 본예산 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아울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및 공익증진이라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방식 개선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역적응센터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차액 4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309,000	1,350,000	△4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309,000	1,350,000	△41,000

###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 △41,000천원 △41,000,000원
	증감사유
	통일부의 국비 가내시 통보 이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감추경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지역적응을 돕는 것이 목적으로 4개 권역별(관악, 강서, 양천, 노원)로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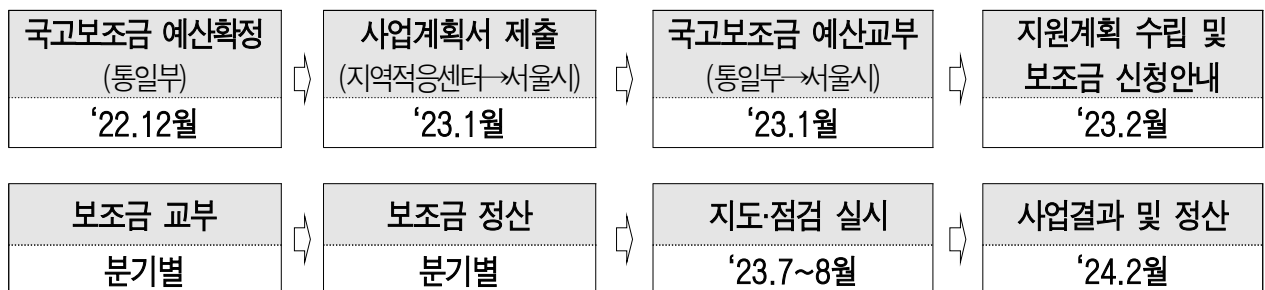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적응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지원
- 지원대상 :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선정기준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및 정착지원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단체로 통일부장관 인정 기관(서울시 추천, 통일부 선정)
- 추진방법 : 국고보조금 지원 및 기관 지도·점검
- 사업내용 :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 지역적응지원,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309백만원(전액 국비)(일반회계)

□ 권역별 운영단체 및 사업지역

센터명	운영단체(소재지)	관할 지역	탈북민수(명)
※ 서울시, 운영단체, 통일부 3개 기관 운영협약 체결 ('22.1.~'24.12. 3년)			6,555
동 부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관악)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47
서 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강서)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1,497
남 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양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1,702
북 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809

□ 추진절차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동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지원 금액이 당초 전년대비 4천 1백만원 증액된 가내시 금액(13억 5천만원)에서 전년 수준(13억 9백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천 1백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으로, 감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행정국은 통일부에서 센터 인건비 등 소요금액을 4천 1백만원 증액 조정코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인 바, 센터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원활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아.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 동 사업은 수련원 객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품 수리 및 이용객 대상 계절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을 납부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안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단가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1억 3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02,917	370,720	132,197
사무관리비	84,200	84,200	0
공공운영비	398,197	266,000	132,197
공무원 교육여비	520	52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20,000	0

**<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 공 운 영 비	○냉난방 연료비 136,800,000원-85,500,000원	=	51,300천원
	○전기요금 165,300,000원-114,000,000원	=	51,300천원
	○상하수도 요금 96,097,000원-66,500,000원	=	29,597천원
	증감사유		
	○ 공공요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단가 인상으로 추가 예산 필요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단가인상에 따른 수련원 객실 및 부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냉·난방 시설 운영시 에너지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공요금 단가인상 세부내역 ]**

구 분	인상시기	인상율(%),원	산출계산식	비고
전기	'22. 4월	증)4.9원/kWh	- 소요예산 : 398,197천원 · 245,801천원('22년 공공요금 납부액) × 1.62(증가율 62%)	한전단가
	'22.10월	증)11.9원/kWh		
	'23. 1월	증)19.4원/kWh		
	'23. 5월	증) 8원/kWh		
상·하수도	'22. 11월	증)15%	· 증가율 62% 산출 근거 · 1~4월 집행액 : ('22년) 83,624천원/ ( '23년) 136,113천원	속초 상수도
가스	'22. 4월	27.3원/m³		참빛도시 가스(속초)
	'22. 9월	33.4원/m³		
	'22.10월	36.4원/m³		
	'22.11월	38.1원/m³		
	'23. 1월	38.7원/m³		

- 전기요금산출은 기본요금, 계절별, 사용시간별(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단가 적용, **소요예산 산출은 전년도 대비 집행액 비율 적용하여 산출 함.**
  - 경부하(23:00~09:00), 중부하(그외시간 )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 계절별(봄·가을, 여름, 겨울)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